

제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8

제출년월일 : 2001. 11. 16.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 안 이 유

-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하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이므로 점용료를 일할계산 반환하는 것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 등은 일할계산하여 반환하는것으로 완화.

3. 근 거 법령

- 소하천법 제22조①항 및 ⑤항

4. 의 안 전 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첨 부 : 1. 기타참고자료(법령등)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의 점용료등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p> <p>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p> <p>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등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제 362 호

제 천 시 보

2001. 10. 12(금)

입 법 예 고

제천시 공고 제2001-594호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10월 4일

제 천 시 장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하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이므로 허가일로부터 허가취소일까지 점용료를 일할산정 감액하여 남은 점용료는 반환하는 것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허가일로부터 허가취소일까지 점용료를 일할산정 감액하여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완화

3. 의견제출

- 가. 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1년 10월 24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640-6455 · 6)
-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간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기타참고사항 등

法	施 行 습	施 行 規 則
	<p>부지등의 교환에 따른 수익</p> <p>5. 소하천부속물중 불용물건의 처분금</p> <p>6. 기타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수익 ②법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소하천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3. 소하천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4. 소하천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法	施 行 습	施 行 規 則
第22條(占用料등의 徵收) ①管理廳은 第14條의 规定에 의한 허可를 받은 者로부터 流水 및 土地의 占用料、 土石·모래·자갈등 小河川產出物의 採取료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產에 관한	<p>보상에 필요한 비용</p> <p>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 부지등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p> <p>7.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규정된 것외에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命	施 行 規 則
<p>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管理廳은 第14條의 规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한 者로부터 당해 占用料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不當利得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產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第10條 또는 第14條의 规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管理廳은 第10條 또는 第14條의</p>		

法	施 行 命	施 行 規 則
<p>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경우에 그 工事 또는 그 占用·사용이 公益을 目적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것일 때에는 占用料등 또는 許可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p> <p>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规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不當利得金 및 許可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하며, 그 금액과 徵收方法 및 第4項의 规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許可手數料의 減免對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p> <p>第23條(負擔金등의 強制徵收) 第21條 第2項의 规定에 의한 負擔金, 第22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占用料등 및 同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p>		

제7차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심의안
회 의 결 과 보 고

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01. 9. 5(수) 15:00
- 장 소 : 2층 상황실
- 참석 :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
※ 해당과장 및 담당 참석 : 4명
- 안건 :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심의(8건)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 의안번호 6번 : 완화내용 수정

1. 주요심의 내용

-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적정성 여부 심의
- 주요심의 당초안 : 8건(폐지 3건, 완화 3건, 존치 2건)

2. 심의결과

안건상정	원안가결	수정가결	비고
8건	7건	1건	1건 완화 내용 수정

3. 수정된 심의내역

- 의안번호 6번
 - 규정명 : 제천시봉양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규정제19조제5항
 - 규제사무 : 도서의 대출금지
 - 규제내용 : 관장은 연2회이상 도서의 반환기일을 어긴사람에게는 도서대출을 금지시킬수 있다

- 심의상정안 : 반환기간이 늦거나 도서의 불량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에 의한 기일만큼 대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로 개정 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완화내용 변경

- 별도의 산정이라는 내용이 예외하고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음으로 대출금지기준을 연2회이상 도서의 반환기일을 어긴사람에서 연3회이상 도서의 반환기일을 어긴사람으로 개정하는것으로 완화 의결

4. 부서별 의결 내역

구분	합	계	조	례	규	칙	고	시	등			
부서별	계	폐지	완화	존치	계	폐지	완화	존치	계	폐지	완화	존치
계	8	3	3	2	2	1	1	-	1	-	1	5
세정과	1	1			1	1					2	2
문화관광과	5	2	2	1					5	2	2	1
건설과	1		1		1		1					
시립도서관	1		1				1		1			

붙임 : 의결 내역 및 회의록 1부. 끝.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내역

의안 번호	조례 · 규칙등 명칭	규 제 내 용	의결 결과	해당 실과
1	제천시수입증지조례	판매인의 지정	폐지	세정과
2	제천시봉양도서관설치및관 리운영규정	복사기 사용 수수료	존치	문화 관광과
3	제천시봉양도서관설치및관 리운영규정	도서의 대출(대출신청서)	폐지	“
4	제천시봉양도서관설치및관 리운영규정	도서의 대출(대출기간)	완화	“
5	제천시봉양도서관설치및관 리운영규정	도서의 대출(도서 반환)	폐지	“
6	제천시봉양도서관설치및관 리운영규정	도서의 대출(대출 금지)	완화	“
7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 료징수조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완화	건설과
8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복사기 사용	존치	시립 도서관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규제사항 심의안건

발굴번호	7	관련부서	건설과
조례·규칙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7조제1항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제22조		
규제사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규제내용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제안의견	<p>【완화】</p> <p>반환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하는 시민의 권리 를 제한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 적 행정행위 규정으로 볼 수 있음으로 일할계산하여 반환한 다 등으로 규제 완화 필요.</p>		
해당부서 검토의견	<p>【완화】</p> <p>점용료를 년간 부과하고 있으므로, 허가취소시 허가일로부터 허가취소일까지 점용료를 산정하여 감액하는 규정으로 완화</p>		
의결내용	<p>■ 완화</p>		